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66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6년 4월 24일
- 회 부 일 : 2026년 4월 24일

2.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획 변경, 구의원 총정수 변경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등 일부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확정안 내용으로 자치구별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직선거법」 [별표 3] 및 부칙 제3조 개정에 따른 자치구의회의원 총정수 변경 (안 별표) : 현 427명 (지역구 373, 비례대표 54)
⇒ 436명 (지역구 383, 비례대표 53)
- 「공직선거법」 [별표 3]에 따른 증 2명
-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른 증 7명

나.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자치구
회의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안 별표)

- 「공직선거법」 [별표 2]의 시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른 구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 노원, 관악, 송파, 강동
-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시실에 관한 특례)에 따른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 성북, 도봉, 관악, 강남, 강동
 - ※ 중대선거구 실시 자치구 총 8개 중 동대문, 강서는 제8회 지선 선거구 및 정수 유지
-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 서초, 강동, 송파
-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의원 선거구 간 의원정수 조정에 따른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 용산, 서대문, 금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 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근거

5.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이라 함)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법률 제21577호, 일부개정 및 시행 2026.4.22.)의 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함)에서 의결·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 총정수 112명(지역구 101, 비례 11) ⇒ 118명(지역구 103, 비례 15)

- 비례대표 의회의원 산정 기준 확대(제22조제4항)
 -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 (개정) 100분의 14
- 지역구 의회의원 정수([별표 2])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 101명 → (개정) 103명(관악 +1, 강동 +1)
- 지역구 관할구역([별표 2])
 - (노원)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24년) 및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선거구 변경
 - (송파) 제5선거구 및 제6선거구 관할구역 변경
 - (강동)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24년) 및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선거구 변경
 - (관악) 시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변경

선거구명		기 존	변 경
		행 정 동	행 정 동
노원	제3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하계1동, 하계2동 , 중계본동, 중계2·3동
	제4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 상계6.7동	중계1동, 중계4동 , 상계6.7동
송파	제5선거구	거여1동 ,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위례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위례동
	제6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거여1동 ,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강동	제2선거구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상일제1동 , 명일제1동, 명일제2동
	제3선거구	강일동, 상일제1동 , 상일제2동, 고덕제2동	강일동, 상일제2동, 고덕제2동
	제5선거구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선거구명		기 존	변 경
		행 정 동	행 정 동
	제6선거구	-	길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관악	제1선거구	보라매동, 청룡동 , 은천동, 중앙동 , 신림동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제2선거구	청림동, 성현동 ,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제5선거구	-	청림동, 성현동, 청룡동, 중앙동

○ 특례(부칙 제2조) - ‘중구성동구을’ 중 성동구를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해 의원정수 산정

□ **자치구의회의원 : 총정수 424명 → 426명**

○ 자치구의회의원 정수([별표 3])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구의회 의원 424명 → (개정) 426명

○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부칙 제3조)

- (현행) 시범실시 지역 자치구 4개(지역 4개) → (개정) 자치구 8개(지역 10개)

- (최대정수) 시범실시지역 내 하나의 자치구의원 최대정수는 5인으로 함

- (증 원) 시범실시지역 내 자치구의원은 다음 표와 같이 추가로 증원. 증원여부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함.

※ 추가 증원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함.

국회의원지역구	현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추가증원
서울특별시관악구을	관악구아	2	1
서울특별시강남구갑	강남구나	2	1
서울특별시강남구을	강남구라	2	1
서울특별시강동구을	강동구라	2	1
	강동구마	2	1
서울특별시도봉구갑	도봉구나	3	1
서울특별시서초구갑	서초구가	3	1
	서초구나	3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	동대문구마	4	-
	동대문구바	4	1
서울특별시성북구갑	성북구가	5	-
	성북구나	3	-
	성북구다	2	1
서울특별시강서구을	강서구라	3	-
	강서구마	3	1

- 개정된 「공직선거법」(이하 ‘법’)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총정수는 424명에서 426명으로 2명 증원되었으며, 특례(법 부칙 제3조)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자치구 의원 10명을 추가(총정수와 별개임, 부칙 제3조제2항)로 증원할 수 있으며, 증원 여부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3조제1항).
- ※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로,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면 소선거구, 2~4인 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라 함. “중대선거구”는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말하며, 중대선거구는 다당제 유도, 후보 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획정의 용이, 주민대표성 신장 등의 장점이 있음.¹⁾
- 자치구별 의회 의원 정수는 획정위원회가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행정 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3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의원의 최소 정수는 7인이며(법 제23조제2항), 비례대표 자치구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정수는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3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원칙 〉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중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관련 내용 정리한 것임(<붙임 1> 관련법령 참조).

- ①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시·도의 총정수([별표 3] - **서울시 426명**)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함(법 제23조제1항)
 -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함(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②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함(법 제23조제2항).
- ③ 비례대표 자치구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단수는 1로 봄(법 제23조제3항).

1) 김종갑·이정진,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제124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년 1월 24일 참조.

- 비례대표 자치구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함(규칙 제4조제1항제2호).

④ 지역구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자치구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규칙 제4조제2항).

※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 비례 3:1)로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1.6.24. 선고 2018헌마405 전원재판부).

⑤ 자치구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 하나의 자치구 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자치구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함(법 제26조제2항).

⑥ 자치구의원 지역구 획정 시 동(행정동)의 일부 분할 불가(법 제26조제3항).

⑦ 법 부칙 제3조제1항 중대선거구제 특례 적용에 따라 추가 증원

- (기존) 서초구가선거구(1), 동대문구바선거구(1), 성북구다선거구(1), 강서구마선거구(1)

- (확대) 관악구아선거구(1), 강남구나선거구(1), 강남구라선거구(1),

강동구라선거구(1), 강동구마선거구(1), 도봉구나선거구(1)

- 시범실시지역 자치구의원 최대정수는 5인, 증원 여부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함.

- 추가 증원 인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 별개로 함.

○ 이에 따라 획정위원회는 1차 회의('25.9.18.)에서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인구수 기준일'을 2025년 8월 31일로 정하였고, 「공직선거법」 개정('26.4.22.) 이후 개최된 회의를 통해 자치구별 의원정수 배분 및 선거구 변경 등 선거구 획정안 최종보고서 심의·의결하고 서울시장에게 제출('26.4.22.)하였음.

<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 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

○ 인 원 : 총 11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서울시의회(2명),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1명), 학계(2명), 법조계(2명), 언론계(2명), 시민단체(2명)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

○ 임 기 : 위촉일 ~ 선거구획정안 최종보고서 제출일까지(비상설)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기 능 :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 확정위원회 운영 경위 〉

- 제1차 ~ 제6차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25.09.18. ~ 11.29.)
 - 1차 회의(' 25.09.18.) -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 인구수 기준일 : 2025. 8. 31.
-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잠정안 시장 제출('25.12.03.)
- 「공직선거법」 개정('26.04.18. 본회의 의결, 04.22. 공포·시행)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26.04.19. ~ 04.20.)
 -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 ▶ (기존) 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 ▶ (추가) 관악구을, 강남구갑, 강남구을, 강동구을, 도봉구갑
 - ※ 국회의원실 의견조회 결과,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에 규정된 대로 추가증원 요청
- 제7차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및 최종안 의결('26.04.22.)
-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보고서 시장 제출('26.04.22.)

※ 당초 선거구획정안은 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전('25.12.2.)까지 시장에게 제출 되었어야 하나(법 제24조의3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2026년 4월 18일 의결 후, 4월 22일 공포·시행되었음.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시행일 후 9일('26.5.1.)까지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조례의 제출과 심사가 긴급한 일정으로 추진되었음.

○ 이후 서울시는 확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안건으로 2026년 4월 2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회부 되었음.

○ 확정위원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총정수는 법 [별표 3]에 따른 총정수 426명과 부칙 제3조제1항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의 증원정수 10명을 포함 하면, 총 436명(지역구 383명, 비례 53명)으로 현행 427명(지역구 373명, 비례 54명) 대비 총 9명이 증가(지역구 10명 증가, 비례 1명 감소)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이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바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조정함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투표 가치의 평등성’과 ‘지역 대표성’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획정 기준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자치구별 정수배분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26조의2(현행 제38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였음(헌법재판소 2009.3.26. 2006헌마14 전원재판부 참조).

※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판단하였음(헌재 2018.6.28. 2014헌마166; 헌재 2021.6.24. 2018헌마405; 헌재 2025.10.23. 2022헌마1247 참조).

○ 다만, 관련 법령상(법 제24조의3제6항)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의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의 변동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과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하고 있으나, 선거구획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후보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입법예고 절차 생략이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주요내용

1)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조정(안 [별표])

-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의원 총정수는 법 [별표 3]에 따른 총정수 426명과 부칙 제3조제1항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의 증원정수 10명을 포함하여 총 436명(지역구 383명, 비례 53명)으로 현행 427명(지역구 373명, 비례 54명) 대비 총 9명이 증가(지역구 10명 증가, 비례 1명 감소)하였음.
- 확정위원회는 법에 따른 확정 기준에 따라 총정수의 범위내에서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7개 자치구(성북, 도봉,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10명이 증가하였고, 1개 자치구(종로)에서 1명이 감소하였음.

〈 서울시 자치구의의원 자치구별 의원정수(안) 〉

구 분	현 행			조 정(위원회 안)			비 고
	총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총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계	427	373	54	436(+9)	383(+10)	53(-1)	특례증원 포함
종로구	11	9	2	10(-1)	9	1(-1)	
중구	9	8	1	9	8	1	
용산구	13	11	2	13	11	2	
성동구	14	12	2	14	12	2	
광진구	14	12	2	14	12	2	
동대문구	19	17	2	19	17	2	·특례증원 유지
중랑구	17	15	2	17	15	2	
성북구	22	19	3	23(+1)	20(+1)	3	·특례증원 추가
강북구	14	12	2	14	12	2	
도봉구	14	12	2	15(+1)	13(+1)	2	·특례증원 추가
노원구	21	18	3	21	18	3	
은평구	19	17	2	19	17	2	
서대문구	15	13	2	15	13	2	
마포구	19	17	2	19	17	2	
양천구	18	16	2	18	16	2	

구 분	현 행			조 정(위원회 안)			비 고
	총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총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강서구	23	20	3	23	20	3	·특례증원 유지
구로구	16	14	2	16	14	2	
금천구	10	9	1	10	9	1	
영등포구	17	15	2	17	15	2	
동작구	17	15	2	17	15	2	
관악구	22	19	3	23(+1)	20(+1)	3	·특례증원 추가
서초구	16	14	2	17(+1)	15(+1)	2	·특례증원 유지 ·정수 증원
강남구	23	20	3	25(+2)	22(+2)	3	·특례증원 추가
송파구	26	23	3	27(+1)	24(+1)	3	·정수 증원
강동구	18	16	2	21(+3)	19(+3)	2	·특례증원 추가 ·정수 증원

* 비례대표 의원 정수 :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함. 이 경우 단수는 1로 봄(「공직선거법」 제23조제3항)

※ 출처 :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먼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 중 기존 지역인 동대문, 강서, 서초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의 증원 상태를 유지하고, 성북은 지난 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증원 없이 실시했으나, 이번에 1명을 추가 증원하였고, 이번에 새롭게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된 관악(1), 강남(2), 강동(2), 도봉(1)에서 추가 증원되었음.
- 다음으로, 확정위원회는 자치구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종로구는 비례대표 1명이 감소(2명 → 1명)되었고,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서초, 송파, 강동은 지역구 의원이 각각 1명을 증원하였음.
- 이는 확정기준인구으로 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강동(31,236명), 서초(29,417명), 송파(28,130명)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1인당 인구수가 적은 종로(15,348명)는 비례대표 2명을 1명으로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겠음.

〈 서울시 자치구 획정기준인구에 따른 구의원 1인당 인구수('25.8.31.기준) 〉

자치구	획정기준인구	현재 지역구 구의원수 (중대선거구 특례 포함)	기준인구(구의원1인당)
강동구	499,779	16	31,236
서초구	411,836	14	29,417
송파구	646,989	23	28,130
구로구	392,214	14	28,015
강남구	556,947	20	27,847
광진구	334,119	12	27,843
강서구	552,464	20	27,623
은평구	459,391	17	27,023
노원구	485,933	18	26,996
양천구	427,842	16	26,740
관악구	491,388	19	25,863
금천구	227,419	9	25,269
영등포구	378,880	15	25,259
중랑구	378,033	15	25,202
도봉구	301,200	12	25,100
동작구	375,318	15	25,021
강북구	281,068	12	23,422
서대문구	302,891	13	23,299
성동구	274,239	12	22,853
성북구	424,829	19	22,359
마포구	360,204	17	21,188
동대문구	345,537	17	20,326
용산구	203,515	11	18,501
종로구	138,131	9	15,348
중구	119,548	8	14,944

※ 획정기준인구는 2025년 8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수와 선거권 있는 외국인 수를 합친 수임.

- 종로(15,348명당 의원 1명)와 강동(31,236명당 의원 1명) 사이 인구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바, 획정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가 많은 곳은 의원을 늘리고, 적은 곳은 줄여서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를 최대한 균등하게 맞추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의원 증원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여짐.

2) 자치구의회의 의원 선거구 변경(안 [별표])

-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선거구 총수는 154개로 종전과 동일하나, 선거구별 의원 정수 구성에서 2인 선거구는 9개 감소(98개→89개)한 반면, 3인 선거구 7개 증가(50개→57개), 4인 선거구 3개 증가(3개→6개), 5인 선거구 1개 감소(3개→2개)하여 전반적으로 선거구의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한 결과로, 법 개정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법 부칙 제3조제1항), 특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획정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5인 선거구
조정 전	154	98(64%)	50(32%)	3(2%)	3(2%)
조정 후	154	89(58%) (-9)	57(37%) (+7)	6(4%) (+3)	2(1%) (-1)

※ 출처 :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또한, 선거구 조정은 총 11개 자치구, 27개 선거구가 조정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시의원 선거구 변경(노원, 관악, 송파, 강동), 중대선거구 변경 및 확대(성북, 도봉, 관악, 강남, 강동), 그리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불균형 해소(용산, 서대문, 금천)를 위해 조정되었음.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14개 자치구의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음. 다만, 종로구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1명 줄어들면서, 전체 의원 정수가 11명(지역구 9명, 비례 2명)에서 10명(지역구 9명, 비례 1명)으로 조정되었음.

○ 먼저,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① 용산 다선거구(인구수 53,767명)와 마선거구(인구수 38,965명) 간 정수 교체, ② 금천 가선거구(인구수 73,277명)와 나선거구(인구수 55,875명) 간 정수 교체, ③ 서대문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수 차이로 서대문갑(142,161명)과 서대문을(160,730명) 간 선거구 조정과 정수를 교체하였음.

○ (용산) 선거구 간 인구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하여 다·마 선거구 간 정수 교체

선거구	인구수	지역구 정수		선거구역
		기존	변경	
다 선거구	53,767명	<u>2인</u>	<u>3인</u>	이촌제1동, 이촌제2동, 한강로동
마 선거구	38,965명	<u>3인</u>	<u>2인</u>	서빙고동, 보광동, 이태원제동, 한남동

○ (금천) 선거구 간 인구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하여 가·나 선거구 간 정수 교체

선거구	인구수	지역구 정수		선거구역
		기존	변경	
가 선거구	73,277명	<u>2인</u>	<u>3인</u>	가산동, 독산제1동
나 선거구	55,875명	<u>3인</u>	<u>2인</u>	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 (서대문) 국회의원선거구간 인구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선거구 조정

국회의원 선거구	기 존			변 경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서대문 갑	가 선거구	3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좌동		
	나 선거구	<u>2</u>	연희동	나 선거구	<u>3(-1)</u>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다 선거구	<u>2</u>	홍제제1동, 홍제제2동			

국회의원 선거구	기 존			변 경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서대문 을	라 선거구	3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다 선거구	3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마 선거구	3	남가좌제1동, 남가좌 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라 선거구	4(+1)	남가좌제1동, 남가좌 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 출처 :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다음으로, ④ 관악은 시의원 선거구 증가(4→5)에 따른 선거구 변경 및 중대 선거구 실시에 따른 추가 증원이 있으며, ⑤ 송파는 시의원 선거구 변경 (거여1동 : 제5선거구→제6선거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인구 편차가 높은 아선거구 정수가 증원(2→3)되었고, ⑥ 강동은 시의원 선거구 증가(5→6)에 따른 선거구 변경, 중대선거구 실시에 따른 추가 증원(+2), 자치구간 인구 편차 고려한 정수가 순증(+1)되었음.

- 특히, 강동 라와 마선거구는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실시 지역으로 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추가되었으나, 이 중 마선거구는 정수 증원으로 인구 비중이 44.4%(인구편차 -55.6%)로 헌법재판소의 허용 기준(50%)을 벗어나게 되나, 이는 확정위원회가 법 부칙상 명시된 ‘현행 선거구 유지 및 정수 증원’ 지침이 인구 편차 기준보다 우선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결정(‘26.4.21.)을 준용하여 확정된 결과 라고 하겠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1일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 선거구획정 등 관련 결정」에서 “개정안 부칙 제3조제1항 표에 따라 ‘현 기초의원선거구’로 확정 하고 ‘추가 정원’하여 인구 편차 3:1을 벗어나더라도 ‘표’의 ‘현 기초의원선거구’ 및 ‘정수’를 위반하여 선거구획정 및 정수배분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음.

○ (관악) 시의원 선거구 변경 및 중대선거구 실시에 따른 추가증원

기 존			변 경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가 선거구	3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좌동		
나 선거구	2	중앙동, 청룡동	나 선거구	3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행운동
다 선거구	3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다 선거구	4	중앙동, 청룡동, 성현동, 청림동
라 선거구	2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마 선거구	3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라 선거구	3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바 선거구	2	난곡동, 난향동	마 선거구	2	난곡동, 난향동
사 선거구	2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바 선거구	2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아 선거구	2	삼성동, 대학동	사 선거구	3(+1)	삼성동, 대학동

○ (송파) 시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른 선거구 조정 및 정수 순증(+1)

기 존			변 경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사 선거구	2	거여1동, 마천동, 마천2동	사 선거구	2	거여2동, 마천동, 마천2동
아 선거구	2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아 선거구	3(+1)	장지동, 위례동
자 선거구	2	오금동, 가락본동	자 선거구	2	좌동
차 선거구	2	가락2동, 문정1동	차 선거구	2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 (강동) 국회의원·시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구의원 선거구 변경, 중대선거구 특례증원 (+2), 자치구간 인구편차 고려한 정수 순증(+1)

※ 선거구 직제 변경

기 존			변 경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가 선거구	3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고덕제2동	가 선거구	3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나 선거구	3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나 선거구	3	명일제1동, 명일제2동, 상일제1동
다 선거구	3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다 선거구	2	강일동, 상일제2동, 고덕제2동
라 선거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라 선거구	3(+1)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기 존			변 경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마 선거구	2	천호제2동	마 선거구	3(+1)	천호제2동
바 선거구	3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u>둔촌제1동</u> , <u>둔촌제2동</u>	바 선거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			<u>사 선거구</u>	3(+1)	<u>길동</u> , <u>둔촌제1동</u> , <u>둔촌제2동</u>

※ 출처 :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마지막으로, ⑦ 노원은 국회의원·시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다·라 선거구를 조정하였고, ⑧ 서초는 자치구 간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정수를 증원(+1) 하였으며,
- 중대선거구 확대로 ⑨ 도봉은 나선거구에 추가 증원(3→4)하였고, ⑩ 강남은 나선거구와 라선거구에 각각 추가로 증원하였으며, ⑪ 성북은 제8회 지방 선거 시에는 추가 증원 없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나선거구를 나·다로 분할 후 다선거구에 추가 증원하였음.
- 특히, 성북구갑 선거구는 법 부칙 제3조제1항 표상의 기재(가·나·다)와 실제 현행 선거구(가·나)가 상이한 문제가 있었으나, 현행 선거구와 법상 표기가 다를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26.4.21.)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였다고 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1일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 선거구획정 등 관련 결정」에서 “표에 기재된 ‘현 기초의원 선거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와 다른 경우 확정위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 선거구획정”하고, “확정위는 표에 따라 증원이 가능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인 경우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법 시행일 후 2일까지) 확정안을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에게 제출 후 증원 의견 반영”하라고 결정하였음.

※ 확정위원회는 성북구갑 국회의원 의견에 따라 가선거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5인으로 하고, 기존 나선거구를 나·다선거구로 분할하고, 나선거구 3인, 다선거구 3인으로 결정하였음.

○ (노원) 국회의원·시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른 다·라 선거구 조정

선거구명		구의원정수	선거구역	
시의원	구의원		기존	변경
제1선거구	가 선거구	3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좌동
제2선거구	나 선거구	3	공릉1동, 공릉2동	좌동
제3선거구	다 선거구	3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 중계4동	하계1동, 하계2동 , 중계본동, 중계2.3동
제4선거구	라 선거구	3	하계2동 , 중계2.3동 , 상계6.7동	중계1동 , 중계4동 , 상계6.7동
제5선거구	마 선거구	3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좌동
제6선거구	바 선거구	3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좌동

○ (서초) 자치구간 인구편차를 고려하여 **정수 순증(+1)**

※ 제8회 중대선거구 추가증원 유지(가선거구 4석 유지)

선거구명	지역구 정수		행정동명
	기존	변경	
마 선거구	2	3(+1)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 (도봉) 중대선거구 추가 실시에 따라 나 선거구 추가 증원(3→4)

선거구명	지역구 정수		행정동명
	기존	변경	
나 선거구	3	4(+1)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

○ (강남) 중대선거구 추가 실시에 따라 나·라 선거구 추가 증원

선거구명	지역구 정수		행정동명
	기존	변경	
나 선거구	2	3(+1)	압구정동, 청담동
라 선거구	2	3(+1)	개포1동, 개포4동, 개포2동

- (성북) 제8회 지방선거 시 추가 증원 없이 중대선거구 실시하였으나, 제9회 지방선거는 추가 증원하여 실시
 - 가 선거구 5인 유지, 나 선거구 분할하여 다 선거구 추가증원

기 존			변 경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가 선거구	5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인암동, 보문동	좌동		
나 선거구	5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나 선거구	3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다 선거구	3(+1)	정릉제1동, 길음제1동

* 기존 다·라·마·바 선거구 명칭 변경 → 라·마·바·사 선거구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에 규정된 '현 기초의원 선거구'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와 달라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 의견(4.20.)을 반영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추가증원을 배정함.

※ 출처 :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선거구획정은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변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획정위원회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하여 인구 편차를 해소(용산, 금천, 서대문)하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른 선거구 조정(노원, 관악, 송파, 강동)으로 상위 선거구와의 정합성 제고,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원 수를 줄이고 많은 곳으로 옮기는 '제로섬 (Zero-sum)' 방식 적용으로 지역구 간 형평성이 제대로 맞추어졌는지 여부, 선거구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산술적인 인구 비례에만 치중하여 실제 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대표성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음.

3) 행정동명 및 선거구명 명칭변경(안 [별표])

-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 가선거구의 ‘용신동’을 법정동 명칭인 ‘용두동’과 ‘신설동’으로 분리 표기하고, 강남구 마선거구의 ‘일원2동’을 변경된 명칭인 ‘개포3동’으로 수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였음.

선거구	기 존	변 경	변경일
동대문구 가선거구	<u>용신동</u>	<u>용두동</u> , <u>신설동</u>	'25.7.1.
강남구 마선거구	일원본동, 일원1동 <u>일원2동</u>	일원본동, 일원1동 <u>개포3동</u>	'22.12.23.

※ 출처 :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증원, 지역구 변경·신설 및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 선거구획정은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역의 생활권과 지리적 특성 등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참정권과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치구의회의 의원 선거의 민주적 기틀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음.
-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의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의 변동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과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2026년 4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확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 시행일 후 9일('26.5.1.)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법 부칙 제7조제1항), 제출된 본 개정안('26.4.24.)을 촉박한 일정으로 심사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 시간은 부족하나, 선거구획정이 지닌 중대성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나 지역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획정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선거구획정은 선거 일정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시점에 획정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는바,²⁾ 선거구획정 기한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헌법재판소가 개선 시한으로 제시한 2026년 2월 19일까지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지연**되었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2월 19일 전체 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국회에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입법 촉구”, 2025년 11월 26일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결정”, 2026년 2월 19일자 참조).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2) 선거구획정이 늦어질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각종 신청·제출 등 선거 절차의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경쟁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유권자도 선거 정보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송진미,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왜 필요한가”, 『이슈와 논점』 제245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12월 26일 참조).

붙임 1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회의의 의원정수)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회의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회의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회의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회의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도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회의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순천시지역, 대구광역시 동구군위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동구지역,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미추홀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춘천시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 내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최대정수는 각각 5인으로 하고,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시·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다음 표와 같이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국회의원지역구	현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추가 증원
서울특별시관악구을	관악구아	2	1
서울특별시강남구갑	강남구나	2	1
서울특별시강남구을	강남구라	2	1
서울특별시강동구을	강동구라	2	1
	강동구마	2	1
서울특별시도봉구갑	도봉구나	3	1
대구광역시동구군위군갑	동구가	2	1
	동구나	2	1
인천광역시남동구갑	남동구가	2	통합
	남동구나	3	
경기도화성시병	화성시바	3	2

경기도광명시갑	광명시가	2	1
경기도평택시병	평택시마	2	1
충청북도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옥천가선거구	4	-
	옥천나선거구	3	-
충청남도청주홍덕	청주시사	3	1
	청주시아	3	-
	청주시자	2	1
	청주시차	3	-
충청남도천안시을	천안시마	2	1
	천안시바	2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김제부안을	김제시가	2	3인선거구 2개
	김제시나	2	
	김제시다	2	
경상북도고령군성주군칠곡군	칠곡군가	2	1
경상남도통영시고성군	통영시라	2	1
서울특별시서초구갑	서초구가	3	1
	서초구나	3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	동대문구마	4	-
	동대문구바	4	1
서울특별시성북구갑	성북구가	5	-
	성북구나	3	-
	성북구다	2	1
서울특별시강서구을	강서구라	3	-
	강서구마	3	1
경기도용인시정	용인시차	3	-
	용인시카	3	1
경기도남양주병	남양주시바	3	-
	남양주시사	4	1
경기도구리시	구리시가	3	1
	구리시나	3	-
대구광역시수성구을	수성구마	4	1
	수성구바	4	-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	동구가	3	1
	동구나	3	-
	미추홀구가	3	-
	미추홀구나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을	광산구다	3	-
	광산구라	2	1
	광산구마	3	-
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논산시가	4	1
	논산시나	3	-
	논산시다	3	-
	계룡시가	3	-
	계룡시나	3	-
	금산군가	3	-
	금산군나	3	-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750명/증원정수 포함 754명) - 생략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3,003명) - 생략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면·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